

1. 개정이유

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‘접종증명·음성확인제’ 명시화 및 시설 관리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로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(별표 10)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‘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’을 명시
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사항 처분 기준 완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0] 행정처분의 기준(제42조제1항 관련) 1. 공통기준 (생략) 2. 개별기준	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0] 행정처분의 기준(제42조제1항 관련) 1. 공통기준 (현행과 같음) 2. 개별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사항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 문</th><th colspan="4">행정처분 기준</th></tr>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위반</th><th>4차 위반</th></tr><tr><td>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 49조 제3항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</td><td>운영 중단 10일</td><td>운영 중단 20일</td><td>운영 중단 3개월</td><td>폐쇄 명령</td></tr><tr><td>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</td><td>운영 중단 10일</td><td>운영 중단 20일</td><td>운영 중단 3개월</td><td>폐쇄 명령</td></tr></table>	위반사항	근거 법조 문	행정처분 기준	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 49조 제3항					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 중단 10일	운영 중단 20일	운영 중단 3개월	폐쇄 명령	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 중단 10일	운영 중단 20일	운영 중단 3개월	폐쇄 명령	<table><tr><th rowspan="2">위반사항</th><th rowspan="2">근거 법조 문</th><th colspan="5">행정처분 기준</th></tr><tr><th>1차 위반</th><th>2차 위반</th><th>3차 위반</th><th>4차 위반</th><th>5차 이상 위반</th></tr><tr><td>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법 제 49조 제3항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가.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,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</td><td>운영 중단 10일</td><td>운영 중단 20일</td><td>운영 중단 3개월</td><td>폐쇄 명령</td><td>-</td></tr><tr><td>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</td><td></td><td>경고</td><td>운영 중단 10일</td><td>운영 중단 20일</td><td>운영 중단 3개월</td><td>폐쇄 명령</td></tr></table>	위반사항	근거 법조 문	행정처분 기준		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	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 49조 제3항						가.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,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 중단 10일	운영 중단 20일	운영 중단 3개월	폐쇄 명령	-	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 중단 10일	운영 중단 20일	운영 중단 3개월	폐쇄 명령
위반사항			근거 법조 문	행정처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 위반	2차 위반		3차 위반	4차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 49조 제3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 중단 10일	운영 중단 20일	운영 중단 3개월	폐쇄 명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 중단 10일	운영 중단 20일	운영 중단 3개월	폐쇄 명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사항	근거 법조 문	행정처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 49조 제3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,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 중단 10일	운영 중단 20일	운영 중단 3개월	폐쇄 명령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 중단 10일	운영 중단 20일	운영 중단 3개월	폐쇄 명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